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22.01.05.

브랜드인베스트 주식회사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등(이하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투자일임수수료(성과수수료 포함)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 ③ 회사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1]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같다. 다만, 계약자산의 특성, 규모, 성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정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과 절차)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제6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인상) 투자일임계약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시 및 통보)

-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

부 칙 <2022.01.0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일임계약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기준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방식,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 시점에서의 평가재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재산의 연환산 수익률로 계산한다. 다만, 평가재산의 계산은 전일 종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비상장 공모주등)은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단가로 계산한다. 또한, 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미실현 이익의 계산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사전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채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3) 단수처리방법

수수료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손실 발생 후 재계약시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산정 방법

손실 발생한 투자일임재산을 재계약할 경우, 성과수수료 수취 기준금액은 재계약 금액이 아니라 손실 전 최고 계약금액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가. 신규 계약 시 기본/성과 수수료 산정 기준

구 분	기본 수수료	성과 수수료
수수료율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협의결정	계약금액의 0~7.0%를 초과한 수익금의 연 30% 이내에서 협의결정
운용기간	1년 단위로 하되 연장가능	1년 단위로 하되 연장가능
지급시기 및 조건	계약일, 매분기말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매분기말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방법	당사 지정계좌로 입금	당사 지정계좌로 입금

나.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기준

구 분	기본 수수료	성과 수수료
수수료율	잔여기간 중 계약상 정해진 기본수수료의 환산금액	경과기간 중 발생한 성과보수 단 성과보수가 부(負)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함.
지급시기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방법	당사 지정계좌로 입금	당사 지정계좌로 입금